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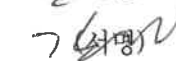


긴급공고 사유서(국가계약법)

계 약 명	2026년 대기환경정보시스템 고도화		
소요예산	금 355,000,000원(금삼억오천오백만원)/부가세 포함		
법적근거 (해당사항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참고	1.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 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국가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 그 밖에 상기 2번, 3번에 준하는 경우		
사 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내 사회재난으로 정의된 미세먼지가 평시보다 높은 겨울철·봄철(12월~3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수행하여 국민 건강의 위해를 예방하고 있음 2026년 제8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26.12.~27.3. 기간 시행됨에 따라, 사회재난 예방 및 계절관리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본 용역 추진 시급		
첨부파일	- (공통) 자체·대행사업 : 상기 법적근거 관련 증빙문서 - 대행사업 : 위탁기관(정부·지방자치단체)의 ‘긴급공고(문구 포함)’ 요청 문서 * 위탁기관 문서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정부종합대책’ 등 명확한 증빙을 추가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 - 상기 1의 2번의 경우 국가의 재정정책이 ‘긴급공고원칙’ 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함		

2026 년 5 월 15 일

담당 성명 유재율 
 부장 성명 김동찬 
 부서장 성명 강혜진 

상기와 같이 긴급공고사유서를 제출합니다.

한 국 환 경 공 단 이사장 (인)

